

보도시점 4.20.(월) 석간 < 4.20.(월) 06:00 >

지역 중소기업 혁신, '기술인력 확보'부터 지원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기술인력 채용지원 시범사업 추진

- 4월 20일(월)부터 5월 6일(수)까지 신청 접수
-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바우처 지원, 채용 부담 완화 및 기술역량 내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 사업을 활용한 '기술인력 채용지원'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등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적합한 인재 확보의 한계와 채용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민간 전문기관(채용대행·헤드헌팅)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채용 지원을 넘어, 기업 내부에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업이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채용에 소요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10억 원이며, 정부지원 비율은 75%이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5~10%p의 우대지원이 추가 적용된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중소기업이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부 기술 역량이 축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4월 20일(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혁신 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0일(월)부터 5월 6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절차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8)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23)에 문의하면 된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실 지역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570)
		담당자	주무관	현승재 (044-204-7588)

붙임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인력 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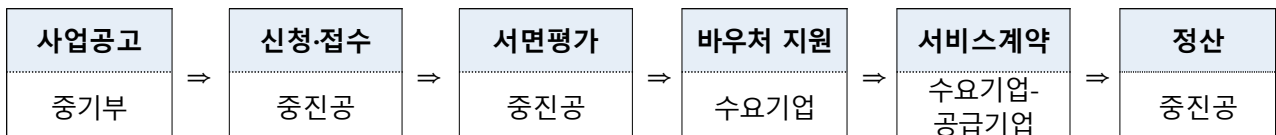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술인력의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매칭(소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

채용지원 사업 기술인력 요건

- ①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②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③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⑤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⑥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지원금액 : 기업당 10백만원 한도(정부지원금 기준)
- 보조율 : 75~85%(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우대) +5%p, (특별) +10%p)
- 추진절차



- 공급기업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채용증빙 : 고용유지(3개월) 후 공급기업은 증빙서류 일체 제출 필요

채용 증빙서류

- ① 채용비용 관련 계약서 / ② 채용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청구) / ③ 자부담분 및 부가가치세 입금 확인 서류 / ④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월평균 보수 표시) / ⑤ 해당 인원의 근로계약서 / ⑥ 해당 인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최근 1년) / ⑦ 기술인력 증빙(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